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해당 철도차량의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의 개량 및 변경 등을 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미한 개조 행위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고 대상 중 철도차량 제작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에 따른 부품 또는 장치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최초 제작당시와 다르게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동 사항을 개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철도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연구·개발 등의 개조행위는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제도에서와 같이 개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철도차량 제작자와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 조치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개조대상에서 제외(안 제75조의4제1항제5호)
- 나. 철도차량 제작자와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은 개조승인 대상에서 제외(안 제75조의4제2항제8호 신설)
- 다.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개조되는 철도차량으로서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개조승인 대상에서 제외(안 제75조의4제2항제9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0. 4. 13. ~ 2020. 5. 2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조의4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철도차량 제작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성능개선을 위한 장치 또는 부품의 변경

제75조의4 제2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철도차량 제작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을 위한 장치 또는 부품의 변경
9.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개조되는 철도차량으로서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의4(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제75조의4(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개조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①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철도차량 제작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 증 또는 성능개선 등을 위한 장치 또는 부품의 변경</u>	5. <u>철도차량 제작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성능개 선을 위한 장치 또는 부품의 변경</u>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철도차량의 개조로 보지 아 니한다.	②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u>철도차량 제작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 증을 위한 장치 또는 부품의 변경</u>
<u><신 설></u>	9. <u>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개 조되는 철도차량으로서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 하는 철도차량</u>

현행	개정안
<u>8.</u> ~ <u>10.</u> (생략)	<u>10.</u> ~ <u>12.</u>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